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8. 8. 31.

## 식품의약품안전처

- 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69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22호, 2017. 4. 7.)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 58종 외 농약의 부적합 사례 발생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과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조정이 필요함

또한,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을 유통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에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추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동 지침 적용대상 범위에 축산물 적용 제외를 명문화함(안 제1조)

축산물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고시를 적용받고 있으나, 동 고시 적용 대상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축산물의 적용 제외를 명문화함

**나.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을 유통관리 대상 식품등에서 제외하고, 검사방법을 명확히 함 (안 제4조 및 제8조)**

별표 1의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은 한약재와 동일한 기준·규격을 적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에 차이가 없는 등 사후관리 실효성이 없어 유통관리 대상 식품등에서 제외하고, 검사방법을 명확히 함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총리령 제1442호, 2018. 2. 9., 시행)을 반영하여 농·임산물에 대한 관능검사 관련 규정을 개정함 (안 제5조)**

농·임산물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검사 대상에서 서류검사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변경하고자 함

**라.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추가 (안 제7조)**

**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제2017-57호, '17.6.30.)를 반영함 (안 제8조, 제13조의3, [별표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변경에 따른 조문 및 조항을 반영하고, 중복된 문구 삭제하는 등 자구 수정

**바. 조건부 수입신고 수리한 식품에 대하여 지방청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입고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시점을 조정 (안 제8조의2제1항 제1호)**

- 3 -



조건부 수입신고한 식품이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이후 확인 하도록 확인 시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

**사.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조정함 (안 [별표3])**

- 1)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의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6종을 추가하고, 58종 중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농약 6종을 제외하고자 함
- 2) 단성분 농약 212종 중, 기준·규격이 신설된 5종을 추가하여 217종으로 조정

**아.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4])**

- 1)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중국산 브로콜리 등 농·임산물 4개 품목과 호주산 과실주 등 가공식품 5개 품목을 인정범위에 추가
- 2)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자몽 및 호두 등 4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6-154호, 2017. 7. 1.자 시행)에 따라 기준이 강화 또는 변경되는 브라질 갈색설탕, 호주 강력밀가루 2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3. 의견 제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3912@korea.kr
-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3) 팩스 : 043-719-2200
-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2호, 2017. 4. 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을 “고시는”으로, “수산물”을 “축산물·수산물”으로 한다.

제2조 중 “지침”을 “고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통관리대상식품등”을 “유통관리 대상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목 “(현장검사 대상 식품의 인정범위)”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건에 해당”을 “조건을 충족”으로, “관능검사 대상”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한다.

제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잔류농약 검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검사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제9. 4.1.2.2.”를 “제7. 7.1.2.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중 “제5.”를 “제4.”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별표 1의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생지황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건조한 것에 한함)은 「대한민국약전」 또는 「대한민국약전의한약(생약)규격집」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하며, 이 경우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이를 통보받은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일 이내”를 “이 경우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소재지의 작업장 또는 보관창고”로, “식품등의”를 “식품등이 입고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 후단 중 “5.”를 “3.”으로, “11)”을 “8)”로, “12)의 (1), (2), (3)에”를 “9)의 ①, ②, ③에”로, “합성물질”을 “합성물질과 ④ 기타 의약품 성분”으로 한다.



[별표 1] 제목 “(116개 품목)”을 “(115개 품목)”으로 한다.

[별표 3] 1. 29번, 31번, 37번, 41번, 52번, 55번을 삭제하고, 59번부터 6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농 약 명
59	클로란트라닐리프로롤(Chlorantraniliprole)
60	클로로벤주론(Chlorobenzuron)
61	피프로닐(Fipronil)
62	루페뉴론(Lufenuron)
63	테부코나졸(Tebuconazole)
64	이옥-디아이피엔(2,6-Diisopropyl-naphthalene)

[별표 3] 2. 단성분 검사 대상에서 “212종”을 “217종”으로 하고, 농약명 중 하단에 “페녹사설펜(Fenoxasulfone)”, “펜플루펜(Penflufen)”, “플룩사메타미드(Fluxametasulfone)”, “티아페나실(Tiafenacil)”, “비사이클로피론(Bicyclopyrone)” 5종을 신설한다.

[별표 4] I. 9와 19를 삭제하고, 22부터 2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브로콜리	중국
23	파	중국
24	월귤(블루베리)/열매	칠레
25	커피	과테말라

[별표 4] II. 8, 9, 10과 18을 삭제하고, 11과 14의 국가란 중 “캐나다”를 “캐나다”로 하며, 19부터 2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과실주	호주, 아르헨티나
20	맥주	독일, 미국
21	연육	베트남
22	캔디류(젤리)	미국
23	당결임	미국







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해당 식품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출장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통·판매된 제품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의3(유해물질 등) ①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11) (1) ① 식품 중 검출되

-----  
-----  
----- 지방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  
--.

3. -----  
----- 지방  
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유해물질 등) ① -----  
-----  
-----.

1. -----  
-----  
-- 3-----  
- 8)-----



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12)의 (1), (2), (3)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당뇨병치료제·비만치료제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2. 3. (생략)

**[별표 1]**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업산물(116개 품목)

**[별표 3]**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1. 동시다성분 검사대상 : 58종

연번	대상 식품
1~28	(생략)
29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30	(생략)
31	톨클로포스메틸(Tolclofos-methyl)
32~36	(생략)
37	파라티온(Parathion)
38~40	(생략)
41	페나리몰(Fenarimol)
42~51	(생략)
52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53~54	(생략)
55	피리미카רב(Pirimicarb)
57~5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9)의 ①,  
②, ③에-----  
-----  
----- 합성물질과 ④ 기타  
의약품 성분

2. 3. (현행과 같음)

**[별표 1]**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업산물(115개 품목)

**[별표 3]**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1. 동시다성분 검사대상 : 58종

연번	대상 식품
1~28	(현행과 같음)
29	<삭제>
30	(현행과 같음)
31	<삭제>
32~36	(현행과 같음)
37	<삭제>
38~40	(현행과 같음)
41	<삭제>
42~51	(현행과 같음)
52	<삭제>
53~54	(현행과 같음)
55	<삭제>
57~58	(현행과 같음)
59	클로란트라닐리프로롤(Chlorantraniliprole)
60	클로로벤주론(Chlorobenzuron)
61	피프로닐(Fipronil)
62	루페녹수론(Lufenuron)
63	테부코나졸(Tebuconazole)
64	이유-다이아피라렌(26-Diisopropylthalene)



2. 단성분 검사 대상 : 212종  
 <생략>, 테부플로퀸(Tebufloquin), <신설>

2. 단성분 검사 대상 : 217종  
 <현행과 같음>, 테부플로퀸(Tebufloquin), 페녹사설펜(Fenoxasulfone), 펜플루펜(Penflufen), 플록사메타마이드(Fluxametamide), 티아페나실(Tiafenacil), 비사이클로피론(Bicyclopyrone)

**[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I. 농·임산물

I. 농·임산물

연번	대상 식품	국가
1~8	(생략)	(생략)
9	작물	미국
10~18	(생략)	(생략)
19	호두	미국
20~21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연번	대상 식품	국가
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0~1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20~2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2	브로콜리	중국
23	표	중국
24	월권(블루베리)/열매	칠레
25	커피	과테말라

II. 가공식품

II. 가공식품

연번	대상 식품	국가
1~7	(생략)	(생략)
8	가공두부	일본
9	갈색설탕	브라질
10	강력밀가루	호주
11	영양강화밀가루	캐나다
12~13	(생략)	(생략)
14	조제커피	캐나다
15~17	(생략)	(생략)
18	토마토케첩	미국

연번	대상 식품	국가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삭제>	<삭제>
9	<삭제>	<삭제>
10	<삭제>	<삭제>
11	영양강화밀가루	캐나다
12~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	조제커피	캐나다
15~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8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9	과실주	호주, 아르헨티나
20	맥주	독일, 미국
21	연유	베트남
22	캔디류(젤리)	미국
23	단철원	미국

III. 식품첨가물

III. 식품첨가물

연번	대상 식품	국가
1~10	(생략)	(생략)
11	파프리카주황색소	인도
12~16	(생략)	(생략)

연번	대상 식품	국가
1~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파프리카주황색소	인도
12~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표 5]**

수입 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1.~5. (생략)  
 6. 검체 채취요령 및 검체량  
 가. (생략)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능검사 검체량은 시행규칙 제44조 관련 별표12 수입식품등의 수거 대상 및 수거량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9.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검사대상이 25,000kg 이상인 경우 검체수거량을 2배로 채취하여야 한다.

**[별표 5]**

수입 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1.~5. (현행과 같음)  
 6. 검체 채취요령 및 검체량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능검사 검체량은 시행규칙 제44조 관련 별표12 수입식품등의 수거 대상 및 수거량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6.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검사대상이 25,000kg 이상 1,000,000kg 미만인 경우 검체수거량을 2배로 하고, 1,000,000kg 이상인 경우 검체수거량을 3배로 채취하여야 한다.

7.~11. (생략)

7.~11. (현행과 같음)